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무처 변경허가 온라인 신청서비스 활용 홍보 협조

1. 관련: 법무부 체류지원과-3084(2019.5.9)
2.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고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3. 법무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018.9.19.부터 기존 체류기간 연장허가 뿐만 아니라 근무처 변경허가 업무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지방관서 및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자 고용허가서 발급시, 각종 상담 및 교육시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물 시안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지방관서(지역협력부서), 고객상담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과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대한건설협회장,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주무관	김정훈	행정사무관	황정호	과장	전결 2019.5.13. 니예순
-----	------------	-------	------------	----	-----------------------------

협조자

시행 외국인력담당관-1451 (2019. 5. 13.)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7153 팩스번호 044-202-8027 / kjhun7210@moel.go.kr / 대국민 공개

"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